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722
----------	-------

발의연월일 : 2026. 2. 10.

발 의 자 : 윤준병 · 서삼석 · 김 윤
이성윤 · 서미화 · 박용갑
문금주 · 박 정 · 김승원
문대림 · 최혁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하여 불법어업·비보고어업 및 비규제어업을 근절하고 예방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 연근해에서의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불법어업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보고사항 및 이행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연근해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을 제정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 현행법을 위반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어선의 소유자 중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연근해어업자 등은 각각의 법률에 따라 과태료와 형벌을 중복적으로 부과받게 되는

문제가 있는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에 따라 벌칙 적용대상이 되는 어선위치발신장치 작동 의무 위반 행위자는 이 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1항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67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제3호 중 “아니한 자”를 “아니한 자.”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 제2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5조의2제1항 본문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5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3조(과태료) ① -----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의2 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어선 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u>아니한 자</u> <단서 신설>	3. ----- ----- ----- <u>아니한 자. 다만,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 제2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u>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